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 결 정 문

---

사건번호: KR-1300090  
신청인: 주리크인터내셔널 피티와이엘티디  
피신청인 : (주)줄리크코리아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주리크인터내셔널 피티와이엘티디(Jurlique International Pty Ltd)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마운트 바커 오븐 로드 52-54

대리인 : 변호사 김동원, 변호사 서대현, 변리사 구은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피신청인: (주)줄리크코리아(jurlique korea Co. Ltd)

101-6 Nonhyun-dong

분쟁 도메인이름은 "jurlique-korea.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식회사 아사달(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번지 우림라이온스밸  
리 A동 8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3. 7. 4.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3. 7. 5.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3. 7. 8.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3. 7. 8.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3. 7. 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3. 7.29.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7.29.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센터는 2013. 7.30.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3. 7.30. 센터는 서정일 조정위원회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3. 8. 1.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을 포함하여 호주, 홍콩,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의 전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상품류구분 제3류의 화장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JURLIQUE” 표장 및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은 신청인의 서비스,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분쟁도메인이름 <jurlique-korea.com>을 2005. 5.12. 등록한 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명의로 “JURIQUE”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지할 수 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품 및 영업표지로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JURLIQUE” 표장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신청인의 주지한 표장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신청인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면서 이 사건 표장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JURIQUE”, “줄리크” 등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수요자들에게 신청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신청인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저명한 표장을 악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진 자라 볼 수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표장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 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분쟁도메인이름 <jurlique-korea.com>에서 “.com”은 도메인 이름의 구성상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jurlique-korea”는 “jurlique”과 “korea”가 (-)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korea”는 대한민국의 영문 명칭에 해당하나 상호간의 유사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식별력이 없는 것인바, 주된

요부인 “jurliqu”라는 표장에 부가적인 관계에 불과하기에 신청인의 명의로 등록된 주지한 신청인의 등록 표장인 “JURIQUE”와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과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된 바도 없고,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어떠한 개연성이나 정당한 사업목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을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기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진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극히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추정하게 한다. 신청인 서비스표의 저명성,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 서비스표와의 극도의 유사성, 분쟁 도메인이름의 그 동안의 사용행태 및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혹은 정당한 이익의 부존재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은 최소한 분쟁 도메인이름이 가지는 신청인의 서비스표와의 유사성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상의 일반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인 <jurlique-korea.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서정일  
1인 조정인

결정일: 2013년 8월 15일